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③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충청북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
제18조 제1항본문중 “공무원의 근속기간” 을 “공무원의 근속기간(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19조 제2항단서중 “특별한 사유가 있는” 을 “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” 으로 한다.

제22조본문중 “필요한 기간” 을 “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” 으로 하고,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때

제26조의2증 “도지사에게 신고하고” 를 삭제한다.

[별표3]의 결혼·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증 “형제자매” 를 각각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” 로 하며, 사망의 대상란증 “백숙부모” 를 “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파견근무) ①-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파견근무) ①-②(현행과 같음) <u>③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</u> <u>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</u> <u>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</u> <u>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</u> <u>한다. 이 경우 충청북도지사는 공관장</u> <u>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</u> <u>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</u> <u>위탁하여야 한다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8조(연가일수) ①<u>공무원의 근속기간</u>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18조(연가일수) ①<u>공무원의 근속기간</u> <u>(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</u> <u>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</u> <u>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)</u></p> <p>-----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 속 기 간</th> <th>연가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월이상 6월미만</td> <td>3일</td> </tr> <tr> <td>6월이상 1년미만</td> <td>7일</td> </tr> <tr> <td>1년이상 2년미만</td> <td>8일</td> </tr> <tr> <td>2년이상 3년미만</td> <td>11일</td> </tr> <tr> <td>3년이상 4년미만</td> <td>14일</td> </tr> <tr> <td>4년이상 5년미만</td> <td>17일</td> </tr> <tr> <td>5년이상</td> <td>20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(생략)</p>	근 속 기 간	연가일수	3월이상 6월미만	3일	6월이상 1년미만	7일	1년이상 2년미만	8일	2년이상 3년미만	11일	3년이상 4년미만	14일	4년이상 5년미만	17일	5년이상	20일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 속 기 간</th> <th>연가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월이상 6월미만</td> <td>3일</td> </tr> <tr> <td>6월이상 1년미만</td> <td>7일</td> </tr> <tr> <td>1년이상 2년미만</td> <td>8일</td> </tr> <tr> <td>2년이상 3년미만</td> <td>11일</td> </tr> <tr> <td>3년이상 4년미만</td> <td>14일</td> </tr> <tr> <td>4년이상 5년미만</td> <td>17일</td> </tr> <tr> <td>5년이상</td> <td>20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	근 속 기 간	연가일수	3월이상 6월미만	3일	6월이상 1년미만	7일	1년이상 2년미만	8일	2년이상 3년미만	11일	3년이상 4년미만	14일	4년이상 5년미만	17일	5년이상	20일
근 속 기 간	연가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월이상 6월미만	3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월이상 1년미만	7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이상 2년미만	8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 3년미만	11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 4년미만	14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 5년미만	17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	20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 속 기 간	연가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월이상 6월미만	3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월이상 1년미만	7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이상 2년미만	8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 3년미만	11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 4년미만	14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 5년미만	17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	20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(생략)</p> <p>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<u>특별한 사유가 있는</u>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</p> <p>③-④ (생략)</p>	<p>제19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-----</u></p> <p>③-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필요한 기간</u>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-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2조(공가) ----- ----- ---- <u>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</u> ----- ----.</p> <p>1. -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</u></p> <p><u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u></p>
<p>제26조의 2(국외여행) 공무원은 <u>휴가기간</u>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의 2(국외여행) ----- <u>휴가기간</u>의 범위내에서 ----- -----.</p>

현 행			개 정 안		
(별표 3) 경조사별 휴가일수표			(별표 3)		
				
구 분	대 상	일 수	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 인	7	결 혼
	자 녀	1	
	<u>형제 자매</u>	1	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u>	...
회 갑	본인 및 배우자	5	회 갑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	
출 산	배우자 (처)	1	출 산
사 망	배 우 자	7	사 망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5	
	자 녀	3	
	<u>형제 자매</u>	3	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u>	...
	<u>백숙 부모</u>	3		<u>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</u>	...
탈 상	배 우 자	2	탈 상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	
	<u>형제 자매</u>	1		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u>	...
비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 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				
				
				